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41

발의연월일: 2025. 4. 18.

발 의 자: 우재준 · 최수진 · 서범수

최은석 · 김재섭 · 조지연

서명옥 · 강승규 · 엄태영

김위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대면진료 이력이 있지만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 등을 위해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계속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역할을 하고 있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환자의 82.5%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와 비슷하거나 대면진료에 비해 불안하지 않다고 답하였으며, 91.7%는 향후에도 계속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의료인 84.7%, 약사의 67.0%도 향후비대면진료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답하는 등 의료현장과 환자의비대면진료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형태는 법

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이에 비대면진료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원격의료)"를 "(비대면협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비대면협진(이하 "비대면협진"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원격의료를"을 "비대면협진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를 "비대면협진을 하는 자(이하 "비대면협진의사"라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를 "비대면협진의사의 비대면협진"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비대면진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상담, 진단 및 처방(이하 "비대면진료"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의료기관을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하지 아니할 것

- 2.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지 정하는 의약품을 처방하지 아니할 것
- ③ 비대면진료는 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⑤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인은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중단할 수 있다.
- 1. 진단에 필요한 환자의 구체적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대면한 상태에서만 실시할 수 있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 3. 진찰을 받는 환자가 환자 본인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4. 제2항제2호에 따라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
- 5. 그 밖에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비대면진 료를 제한하는 경우
- ⑥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의료인이 비대면진료를 하는 중에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2.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이 있었던 경우
- 3. 의료인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4. 그 밖에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 ⑦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인은 환자의 본인확인·진료비 청구 및 수납·기록 관리 및 보존·처방전 전송 등을 위하여 인터넷매체(이 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에서 "비대면진료시스템"이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 ⑧ 비대면진료시스템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대면진료의 실시, 비대면진료시스템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제63조제1항 중 "제34조제2항"을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90조 중 "제35조제1항 본문"을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 <u>(원격의료)</u> ① 의료인(의료	제34조(비대면협진) ①
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 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	
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	
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	<u>비대면협진(이하 "비대면</u>
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u> 협진"이라 한다)</u>
② <u>원격의료를</u> 행하거나 받으	② <u>비대면협진을</u>
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야 한다.	
③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③ 비대면협진을 하는 자(이하
<u> "원격지의사"라 한다)</u> 는 환자를	"비대면협진의사"라 한다)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	
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 <u>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u> 에	④ 비대면협진의사의 비대면협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u> 진</u>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	
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신 설>

_	 		 	 	
_	 		 	 	
_	 	_			

제34조의2(비대면진료) ① 의료인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 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건강 또는 질병의 지 속적 관찰, 상담, 진단 및 처방 (이하 "비대면진료"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의료기관을 비대면진료만 하 는 의료기관으로 운영하지 아 니할 것
- 2.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장 관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처방하지 아니할 것
- ③ 비대면진료는 제3조제2항제 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

시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실시할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할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할수 있다.
- ⑤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인은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중단할 수 있다.
- 1. 진단에 필요한 환자의 구체적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대면한 상태에서만 실시할 수 있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진찰을 받는 환자가 환자 본

 인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u>4. 제2항제2호에 따라 처방이</u>

<u>제한된 의약품의 처방이 필요</u> <u>한 경우</u>

- 5. 그 밖에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하는 경우 ⑥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의료인이 비대면진료를 하는 중에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한 경우
- 2.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갖춘장비의 결함이 있었던 경우
- 3. 의료인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 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4. 그 밖에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⑦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인 은 환자의 본인확인 ㆍ 진료비 청구 및 수납・기록 관리 및 보존 · 처방전 전송 등을 위하 여 인터넷매체(이동통신단말장 치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비대면진료시스템"이라 한다) 를 활용할 수 있다. ⑧ 비대면진료시스템을 운영하 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대면진료 의 실시, 비대면진료시스템 활 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2항, 제34

항 · 제2항, 제38조의2, 제41조 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 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 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 반한 때,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 원·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 제1항 • 제3조의4제1항 • 제3조 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 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 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 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 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제2 지하, 제17조제3항·제4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7조의2제1항·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u>.</u>
②·③ (현행과 같음)
제90조(벌칙)

(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4 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 조제1항 • 제3항(제82조제3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 다), <u>제35</u>조제1항 본문, 제38조 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9 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 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 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 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 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u></u> 利3
4조의2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
,